##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6

발의연월일 : 2021. 12. 24.

발 의 자 : 송재호 · 김민철 · 김영배

민형배 • 이광재 • 이상헌

이장섭 • 이형석 • 한준호

홍익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면서 도로에 늘어선 차들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법률 제 호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시설"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
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리 등) ①
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	
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	
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도	
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안전시설</u> 또는 안전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u> 안전시설</u>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런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